



2

17대 국회 계류 중인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과 주요 쟁점

최민재*

*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위원
mjchoi@kpf.or.kr

17대 국회에서는 2005년 1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고, 회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률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부분을 포함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방송 관련 법률은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률 제정으로 방송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18대 국회에서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개정과 더불어 방송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8대 국회에서 이루어질 주요 미디어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에 대한 토대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7대 국회에 계류 중인 ‘신문법’, ‘언론중재법’, ‘지역신문지원법’, ‘방송법’의 개정안과 주요 쟁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I.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주요쟁점

지난 2006년 6월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17대 국회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대체하는 개념과, 겸영금지 조항의 개정문제, 인터넷신문의 개념 수정문제, 관련 기구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신문법에 대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방송통신 관련법들이 제정되면서, 신문방송겸영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고, 중앙일간지를 중심으로 신문방송겸영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시장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법제정 및 개정현황

-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동년 1월 27일 법 제정, 동년 7월 28일 법 시행.
- 2005년 8월 4일 일부개정 : 제13조의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1항 제4호에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포함됨.
- 2006년 6월 29일 신문법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 :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¹⁾, 제34조(기금의 용도) 제2항 제2호²⁾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제15조(겸영금지 등) 제3항³⁾은 헌법불합치를 결정해 개정이 필요하게 됨. 또한 심판청구 중 신문법 제15조 제2항, 제16조(자료의 신고 등)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소원은 기각 했고, 나머지 심판청구 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이 이루어짐.

1_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2_ 제34조(기금의 용도)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3_ 제15조(겸영금지 등)

- ③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 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위헌 판단(7:2)은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하여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본 조항의 불합리함을 제시함. 첫째,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 점유점유율을 평가하고 있고, 둘째,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에 있어 서로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셋째, 일반일간신문과 특수일간신문을 동일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점, 넷째,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독자의 선택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 만큼 이를 불공정행위의 산물로 보거나 불공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불합리. 따라서 신문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됨(헌법재판소 판례문 요약).

● 법 제13조 ‘겸영금지’ 제3항에 대한 판단(7:2)은 신문의 복수소유 제한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함. 결정문에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은 입법자의 재량으로 평가(헌법재판소 판례문 요약).

● 17대 국회에서는 신문법 관련 일부개정안 9건, 전부개정안 2건이 제출되어 계류 중.

2. 17대 국회 제출 신문법 개정안

〈표1〉 17대 국회 제출 신문법 개정안

발의자	개정영역	주요내용
심재철의원 한나라당 (2007.11. 20)	일부개정	- 법 제2조에 '보도'의 정의 신설. - 법 제3조 제2항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취재의 자유' 조항 신설.
한선교의원 한나라당 (2007. 8. 23)	일부개정	- 법 제12조 '등록' 조항에 '유·무가 여부' 조항 신설.
김영선의원 한나라당 (2007. 7. 19)	일부개정	- 법 제2조 '용어의 정리'에서 인터넷신문의 정의 개정 및 기타인터넷간행물 정의 신설. - 법 제10조 '독자의 권리보호'에서 기타 인터넷간행물의 보도와 논평 기능 제한.
김동철의원 열린우리당 (2006. 12. 12)	일부개정	- 법 제21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항목에 지역신문 관련 취소조항 삽입.
정청래의원 열린우리당 (2006. 12. 11)	일부개정	- 법 제1조 '목적' 개정 -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신문의 정의 개정, '대규모신문사업자' 조항 신설. - 법 제15조 겸영금지 조항 개정 - 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삭제 - 법 제21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에 자료신고 조항 신설 - 법 제26조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등의 설치'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법 제34조 기금의 용도 조항에 우선지원 대상 명시 -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를 지자체장에게 이양
정병국의원 한나라당 (2006. 12. 1)	전부개정	- 법 명칭 '신문법'으로 개정 - 법 제4조 '정기간행물 등의 사회적 책임' 조항 삭제 - 법 제5조 '정기간행물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 삭제 - 법 제15조 겸영금지 조항 개정 - 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삭제 - 법 제18조 '편집위원회' 조항 삭제 - 법 제27~31조 '신문발전위원회' 조항 삭제 - 법 제33조 '신문발전기금' 폐지 - 법 제37조 '신문유통원' 조항 삭제 - '신문재단' 설립 내용 신설(안 제17조)
윤원호의원 열린우리당 (2006. 11. 21)	일부개정	- 인터넷포털 정의 신설(안 제2조 제5호의2 신설). - 법 제43조 '과태료'에서 인터넷포털 행위 명시
심재철의원 한나라당 (2006. 6. 19)	일부개정	- 인터넷포털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 법 제8조 '독자의 권익보호'에 인터넷포털사업자 행위 명시 - 법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에 인터넷포털이용자위원회 설치 명시
정청래의원 열린우리당 (2005. 8. 12)	일부개정	- 법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명시 - 법 제15조 '겸영금지' 개정 - 법 제18조 제1항 '편집위원회' 설치 명시 - 법 제29조 '위원회의 직무'에서 신문발행인 및 편집인의 재산신고 조항 신설
심재철의원 한나라당 (2005. 7. 27)	전부개정	- 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삭제 - 법 제18조 '편집위원회' 조항 삭제 - 법 제37조 '신문유통원' 조항 삭제 - 법 제2조 제5항 인터넷신문의 정의 개정. - 법 제15조 제2항 겸영금지 조항 개정
이경숙의원 열린우리당 (2005. 6. 28)	일부개정	- 법 제28조의 '위원회의 구성' 조항에 위원 자격기준 보강과 위원의 결격사유 항목 추가.

3. 주요 쟁점사안

■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개정안

〈표2〉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개정안

발의자	주요내용
정청래의원 열린우리당 (2006.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 삭제 - 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규모신문사업자’ 정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신문사업자’의 개념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말한다.
정병국의원 한나라당 (2006.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 삭제 - 안 제16조 ‘겸영 및 인수합병 등’ 제2항에 대체 개념 삽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년도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가 전년도 전체 일간신문의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간신문 2. 시장점유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뉴스통신
심재철의원 한나라당 (2005.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7조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삭제

●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의 개정을 다룬 개정안은 3건으로 위헌결정 이전 1건, 이후 2건의 개정안이 제출됨.

● 정청래의원 개정안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개념이 ‘대규모신문사업자’로 수정되었고, ‘대규모신문사업자’의 개념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대규모신문사업자’ 개념은 ‘겸영금지’ 조항에서 일간신문에 대한 겸영을 제한하는 요소로 기능.

● 정병국의원 개정안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을 삭제했고, 발행부수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겸영을 제한하는 항목 추가.

● 심재철의원 개정안에서는 ‘시장지배적사업자’ 개념이 삭제된 상태에서 대체개념이 존재하지 않음.

■ ‘겸영금지’ 조항 개정안

〈표3〉 ‘겸영금지’ 조항 개정안

발의자	주요내용
정청래의원 열린우리당 (2006. 12.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 겸영금지 조항 개정 · 뉴스통신,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일간신문을 겸영하거나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 대규모신문사업자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할 수 없다.
정병국의원 한나라당 (2006.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 겸영금지 조항 개정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있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전년도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가 전년도 전체 일간신문의 월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20% 이상인 일간신문과 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인 뉴스통신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할 수 없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인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정청래의원 열린우리당 (2005. 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심재철의원 한나라당 (2005. 7.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5조 제2항 겸영금지 조항 개정 ·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뉴스통신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음.

- ● 현행법에서는 신문·뉴스통신·종합편성방송·뉴스전문방송의 상호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며(제15조 제2항),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소유한 자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지분을 2분의 1 이상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제15조 제2항)
 - 정청래의원 2006년 12월 개정안에서는 신문법 제15제 제2항, 제3항을 통합하여 개정안 제15조 제2항을 마련.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채널사업자(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의 겸영을 금지하고, 뉴스통신과 방송채널사업자가 일간신문의 주식 확보가능 비율도 100분의 30으로 축소. 제15조 제3항에서는 대규모신문사업자의 다른 일반일간신문 주식 확보 금지로 복수겸영을 금지시키고, 그 외 일반일간신문의 경우 제한을 없앴.
 - 정병국의원 개정안에서는 신문법 제15조(겸영금지 등)를 제15조(소유지분의 제한), 제16조(겸영 및 인수합병 등)으로 분리
 - 제15조에서는 신문법 제15조 제4-8항을 그대로 유지.
 - 제16조에서는 신문법 제15제 제2항, 제3항을 개정 수록. 제2항에서는 신문의 경우 발행부수, 뉴스통신의 경우 시장점유율 제한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는 일간신문, 뉴스통신, 방송(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의 겸영을 허용. 제3항에서는 신문법 제15조 3항의 내용을 승계하고 있지만, 단서조항 삽입(시장점유율 100분의 30 미만인 신문·뉴스통신·방송의 경우 다른 신문·뉴스통신을 인수·합병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정청래의원 2005년 8월 개정안에서는 신문법 제15조 제3항의 주식 보유 제한 비율을 강화시키고 있음.

- 심재철의원 개정안에서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의 겸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기간행물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종합편성·보도전문)에 대한 겸영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 신문법 관련 ‘기구’ 개정안

- 정병국의원 개정안에서는 신문법 제27~31조 ‘신문발전위원회’, 제37조 ‘신문유통원’, 제33조 ‘신문발전기금’ 을 폐지하고, 새로 구성되는 법인인 ‘신문재단’ 이 자료신고 및 교육, 조사, 연구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

- 심재철의원 개정안에서는 신문법 제37조 ‘신문유통원’ 을 폐지 시킴.

■ ‘인터넷신문’ 정의 수정 및 ‘인터넷포털’ 정의 신설

- 김영선의원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신문의 개념 수정 및 기타인터넷간행물 개념 신설.

- 신문법 제2조 ‘용어의 정리’ 에서 ‘인터넷신문’ 은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준으로 50% 이상 뉴스서비스를 하는 매체로, 독자적인 기사생산 개념 삭제. ‘기타인터넷간행물’ 은 초기화면 기준 50% 이하의 뉴스서비스를 하는 간행물로 개념 신설.

- 신문법 제10조 ‘독자의 권리보호’ 에서 기타 인터넷간행물은 인터넷 언론의 공공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정보전달의 목적 이

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 윤원호의원 개정안에서는 인터넷포털의 정의와 기사편집에 대한 제한 규정 신설.

- 인터넷포털의 정의는 편집인력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정기간행물 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기사공급계약을 맺어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 인터넷포털을 운영하는 자는 기사를 제공함에 있어 기사내용을 편집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기사를 생산한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 심재철의원 2006년 6월 개정안에서는 인터넷포털 및 인터넷포털사업자의 기사편집에 대한 제한규정 신설.

- 인터넷포털의 정의는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기타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함으로써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규정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 인터넷포털사업자는 기사의 편성에 있어 자의적이거나 선정적인 편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회수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신설).

- 인터넷포털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 인터넷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어야 함 (안 제9조제2항 신설).

- 심재철의원 2005년 7월 개정안에서는 현행 신문법에서 인터넷 신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안에서 강화된 형태로 규정(취재 및 편집인력을 3인 이상 상시적으로 고용하여 일주일간 게재 뉴스건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독자적으로 생산하며, 최소한 주간 단위로 발행하는 전자간행물).

-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 및 포털사업자에 대한 개념규정과 유사하게, ‘언론중재법’, ‘검색사업자법’에서도 해당 조항이 포함된 법 개정 및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

II.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주요쟁점

17대 국회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지난 2006년 6월에 이루어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인터넷신문의 개념 확대와 정정보도청구권 관련 개정조항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현시점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진 않지만, 관련법인 신문법의 개정방향과 연동된 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1. 법제정 및 개정현황

-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의 통과. 동년 1월 27일 법 제정, 동년 7월 28일 법 시행.

- 2008년 2월 29일 일부개정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개정.

- 2006년 6월 29일 언론중재법에 대해 일부위헌판결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⁴⁾ 본문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부칙 제2조⁵⁾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 언론중재법 제6조 제1항·제4항·제5항,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하여는 각 합헌결정을 선고함.

- 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에 대한 위헌 판단은 ‘정정보도청구의 소’ 자체가 본안소송이기 때문에,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결정함.

-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 판단은 정정보도청구권의 성립요건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의 심리절차에 관하여 언론중재법이 소급하여 적용됨으로써 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은 위헌이라 결정함.

- 17대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관련 일부개정안 10건, 전부개정안 1건 제출 계류 중.

4_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_ 제2조(시행 전 언론보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언론보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의 청구기간,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조정 또는 중재 신청기간에 관한 제14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17대 국회 제출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4〉 17대 국회 제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자	개정영역	주요내용
김중환의원 한나라당 (2007. 3. 2)	일부개정	- 안 제33조의2~5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조정 및 중재절차 수행과정 신설.
최구식의원 한나라당 (2006. 12. 1)	전부개정	-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인터넷신문 정의 삭제, 인터넷언론 정의 신설 - 법 제3조 '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 삭제 - 법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조항 삭제 - 법 제5조 '인격권의 보장 등' 조항 삭제 - 법 제6조 '고충처리인' 조항 삭제 후, 안 제4조 '언론분쟁조정인' 조항 신설 - 법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3항 중재위원구성 관련 1~3호 개정 - 법 제13조 '반론보도청구권'을 안 제13조 '반론보도청구의 요건'으로 개정. 반론보도청구 거부조항 신설 - 법 제14조 '정정보도청구의 요건' 제2항 개정,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한다로 개념 수정. 제3,4항 삭제 - 법 제18조 '조정신청' 제2,3항 손해배상 조항 삭제 - 법 제30조 '손해의 배상' 조항 삭제 - 법 제32조 '시정권고' 조항 삭제 - 법 제33조 '취업금지' 조항 삭제 - 법 제34조 '과태료' 제1항 제1,4호 삭제, 제3호 금액축소 - 안 제3조 '언론중재의 원칙' 조항 신설
전병헌의원 열린우리당 (2006. 11. 9)	일부개정	- 법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1항에 전자우편 사용개념 추가, 제7항 보관의무에서 인터넷신문 제외 - 법 제18조 '조정신청' 제1항, 제3항 개정,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제한기간 개정 - 법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1항, 제6항 개정 - 제 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조항 삭제
노웅래의원 열린우리당 (2006. 10. 10)	일부개정	- 법 제2조 '정의'에서 '인터넷언론', '뉴스서비스제공자' 정의 신설 - 법 제15조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제7항에서 인터넷언론의 보도내용 보관 의무 삭제 - 안 제33조의2 '게시중지조치 청구 등' 조항 신설
박찬숙의원 한나라당 (2006. 7. 7)	일부개정	- 안 제2조 '정의'에서 인터넷신문의 정의 개정
김재윤의원 열린우리당 (2005. 11. 30)	일부개정	- 법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3항 중재위원 위촉관련 조항, 제10항 중재위원장 상임근무로 개정 - 법 제8조 '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제2항 개정.
이재웅의원 한나라당 (2005. 11. 25)	일부개정	- 법 제7조 제10항 중재위원장 상임근무로 개정 - 법 제12조 '중재위원회의 운영재원' 조항 개정

발의자	개정영역	주요내용
노웅래의원 열린우리당 (2005. 11. 8)	일부개정	- 법 제2조 '정의' 에서 인터넷신문 정의 삭제, 인터넷언론 정의 신설.
박찬숙의원 한나라당 (2005. 11. 1)	일부개정	- 안 제2조 '정의' 에서 인터넷신문의 정의 개정 - 법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3항 중재위원 위촉관련 조항 개정
박찬숙의원 한나라당 (2005. 10. 27)	일부개정	- 안 제22조 '직권조정결정' 제5항에서 '인지액' 관련 조항 신설
심재철의원 한나라당 (2005. 7. 27)	일부개정	- 법 제5조 '인격권의 보장' 제2항, 제5항 삭제 - 법 제6조 '고충처리인' 제1항 임의조항으로 개정. 제4항, 제5항 삭제 - 법 제7조 '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제3항 중재위원구성 관련 1~3호 개정 - 법 18조 '조정신청' 제2항 개정, 제7항 신설 - 법 24조 '중재' 제5항 신설 - 안 제25조의2 '중재결정 취소의 소' 신설 - 법 제26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6항 개정 - 법 제30조 '손해의 배상' 제2항 개정 - 법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개정 - 법 제32조 '시정권고' 제1항, 제2항 개정, 제8항 신설. - 법 제34조 '과태료' 제1항의 제1호 삭제

3. 주요 쟁점사안

■ '인터넷신문' 정의 수정 및 '인터넷언론' 정의 신설

- 쟁점대두 이유 :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지만,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 개념은 독자적인 기사생산을 명시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중요한 언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신문사의 인터넷자회사 홈페이지인 '언론사닷컴' 이나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사닷컴' 과 '인터넷포털' 을 포괄하는 '인터넷신문' 의 개념수정이나 '인터넷언론'

론', '뉴스서비스제공자' 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표5〉 '인터넷신문' 정의 관련 개정안

발의자	주요 내용
최구식의원 한나라당 (2006. 1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인터넷신문 정의 삭제, 인터넷언론 정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언론' 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상시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또는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서 인정된 매체.
노웅래의원 열린우리당 (2006.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 '정의' 에서 '인터넷언론', '뉴스서비스제공자' 정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언론' 이라 함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과 '신문' 을 발행하는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 · '뉴스서비스제공자' 라 함은 언론사와 기사공급계약을 맺어 인터넷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박찬숙의원 한나라당 (2006. 7.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조 '정의' 에서 인터넷신문의 정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신문' 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간행하는 전자간행물과 신문법 제2조 제1호 상의 정기간행물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
노웅래의원 열린우리당 (2005. 1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 '정의' 에서 인터넷신문 정의를 삭제하고 인터넷언론 정의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언론' 이라 함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과 방송·뉴스통신·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
박찬숙의원 한나라당 (2005.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2조 '정의' 에서 인터넷신문의 정의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신문' 이라 함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

● 최구식의원 발의안은 신문법 상의 인터넷신문의 개념 대신에 인터넷언론의 개념으로 피해구제 대상 인터넷매체의 성격을 전환하고, 기

○ 사를 매개하는 매체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을 제시.

- 노웅래의원의 2005년 발의안에서는 인터넷언론의 개념으로 피해구제 대상 인터넷매체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과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06년 발의안에서는 인터넷언론의 개념을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과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축소하고, '뉴스서비스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여타 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인터넷포털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함.

- 박찬숙의원의 발의안은 '인터넷신문'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개념을 확장시킴. 2005년 발의안에서는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과 기사를 매개하여 언론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 2006년 발의안에서는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개념을 삭제하고, 정기간행물 및 전자간행물의 기사를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 개념정리.

III.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안과 주요쟁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에 대한 17대 국회의 개정 논의는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의 기한 연장과, 독립적인 기구로서 위상 강화를 위한 개정안들이 제출되어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문법개정 방안과 언론지원기구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전체 법개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법제정 및 개정현황

-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동년 3월 22일 법 제정.
- 2005년 1월 27일 1차 개정 :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서 “위촉 당시 현직언론인은 배제한다”는 조항 삭제. 제10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 조항 신설.
- 2005년 3월 24일 2차 개정 : 기금운영관련 부칙 신설.
- 17대 국회에서는 지역신문법 관련 일부개정안 3건 제출 계류 중.

2. 17대 국회 제출 지역신문법 개정안

〈표6〉 17대 국회 제출 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자	개정영역	주요내용
천영세의원 민주노동당 (2007. 11. 8)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인터넷신문’ 정의 - 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 제3항에 ‘여성의원’ 신설 개정. 제2호. 위원추천단체 변경. - 법 제9조 ‘위원회의 직무’ 조항 제1항 제3,4호에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의결 및 기금의 관리와 운영조항 추가. 제4항에 사무국 설치조항 신설. - 법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17조 ‘공표 및 결과보고서’, 법 제20조 ‘벌칙’ 조항에서 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위원회로 변경. - 법 제16조 ‘기금의 지원’ 조항에서 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위원회로 변경. 제1항 제2,3호 지원대상 변경 - 법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 삭제 - 부칙 제2항 ‘유효기간’을 2016년 까지 연장
이상민의원 열린우리당 (2007. 9. 27)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인터넷신문’ 정의 신설
김양수의원 한나라당 (2007. 8. 28)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7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조항 개정 - 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 제3항 제2호. 위원추천단체 변경. - 법 제9조 ‘위원회의 직무’ 조항 제1항 제3,4호에 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의결 및 기금의 관리와 운영조항 추가. 제4항에 사무국 설치조항 신설. - 법 제14조 ‘기금의 관리·운용’, 법 제16조 ‘기금의 지원’, 법 제17조 ‘공표 및 결과보고서’, 조항에서 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위원회로 변경. - 부칙 제2항 ‘유효기간’ 삭제

- 천영세의원과 이상민의원 발의안의 경우 지원대상에 지역 인터넷신문을 포함시키는 안이 공통적으로 포함됨.

- 천영세의원 발의안과 김양수의원 발의안에서 신문발전기금 사업의 관리, 운영 주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이관시키는 주장을 동일하게 담고 있음. 또한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법의 유효기간을 천영세의원의 경우 6년 연장, 김양수의원의 경우 삭제하여 일반법 형태로 전환시키자는 주장을 담고 있음.

IV. 「방송법」 개정방안과 주요 방송관련법 법제화 현황

방송관련 법제에서 가장 부각되었던 쟁점은 방송·통신융합과 관련된 기구설치문제와 통신의 방송진출 형태에 관한 문제였다. IPTV 도입에 관한 법제, 통합기구 설치에 관한 법제, 지상파 디지털방송 관련법제와 같은 방송·통신융합 관련법제는 17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인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었다. 이제 18대 국회에서는 앞서 법제화된 방송·통신융합관련 법제를 토대로 전면적인 방송법 개정이 예상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에서는 통신산업의 방송진출에 따라 규제 의 폭이 완화되는 문제, 방송산업 구조의 개편과 신문방송 겸영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방송법 개정 및 주요 방송관련법 법제화 현황

- 제17대 국회 회기 내에서 9차례 일부 개정

- 제17대 국회 회기 내에서 방송법 관련 일부개정안 38건 제출 계류 중.
- 방송 관련법 법제화 현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2007년 12월 28일 국회통과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2008년 1월 29일 국회통과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년 2월 26일 국회통과
- 방송과 통신의 융합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난 수 년 동안 방송관련 법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던 영역은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형태, 이를 관장하는 기구의 형태, 지상파의 디지털전환 과정을 규정하는 법제 형태에 대한 부분이었다. 이 세 가지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 관련 법령은 17대 국회회기 내에 통과 되어 법 시행이 되었거나, 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수차례 부분적인 개정과정을 거치던 방송법은 통신사업자의 방송영역 진출로 인하여 통신관련법과의 조율과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반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2. 「방송법」 개정현황과 주요 개정안

■ 17대 국회 회기 내 방송법 개정 연역

〈표7〉 17대 국회 회기 내 방송법 개정 연역

개정 방송법	주요 개정 사항
16차 일부개정 2007.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유제한 조항 개정(제8조 제7항) -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신설(제9조의2) -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조항 추가(제18조 제1항 6~10호) - 재난방송 관련조항 개정(제75조 제2항) - 재송신 관련 조항 삭제 및 개정(제78조 제5,6항) -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관련 조항 신설(제78조의2) - 시정명령 조항 개정(제99조 제1항 제1호) - 청문관련 조항 개정(제101조 제3호) - 과태료조항 개정(제108조 제1항 제14의2,3호)

개정 방송법	주요 개정 사항
15차 일부개정 2007.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시청권' 정의 신설(제2조 제25항) - 소유제한 조항 개정(제8조 제4항) -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및 직무조항 신설(제42조의2~4) - 채널의 구성과 운용 조항 개정 및 신설(제70조 제6항, 제8항) - 방송광고 영역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개념 확대(제73조 제5항) - 프로그램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관련조항 신설(제76조 제2~5항, 제76조의2~5) -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조항 개정(제84조 제1항) - 벌칙조항 개정(제106조 제2항 제1호)
14차 (타)일부개정 2006.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법 관련 조항 변경(제78조 제3항)
13차 일부개정 2006.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관련조항 신설 (제2조 제3항 마, 제8조 제13항,14항, 제9조 제11항, 제16조, 제69조 제9항, 제78조 제7항, 제86조) - '보도'의 정의 신설(제2조 제24항) - 소유제한 조항 개정(제8조 제6항) - 변경허가 조항 개정(제15조 제1항 제3호 삭제 후 제15조의2 신설) - 과징금 처분 규정 일부삭제(제19조 2~4항) - 심의규정 조항 신설(제33조 제5항)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조항 신설(제35조의3) -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용도 조항 개정(제37조 제1항 제4호 삭제, 제38조 제1항 제1의2호 신설, 제2항 신설) -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정 신설(제69조 제5항) - 어린이 대상 광고관련 규정 신설(제73조 제1항) - 방송내용의 기록·보존조항 개정(제83조 제2항) - 사업자 관련 제재조치 조항 개정 및 신설(제10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 - 벌칙 조항 개정(제106조 제1항 제6호) - 과태료 조항 개정(제108조 제1항 제2호)
12차 (타)일부개정 2006.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2조 제5항 관련법 명칭 개정
11차 (타)일부개정 2005.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위임 관련 기관 명칭 개정(제103조 제1항)
10차 (타)일부개정 2005.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격사유 조항 개정(제13조 제3항 제6호)
9차 일부개정 2005.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역사업권료 징수 규정폐지(제12조 제3항) - 남·북교류 관련 조항 신설(제27조, 제35조의2) - 방송발전기금 조성 및 용도 조항 개정(제37조 제1항 제2호 삭제, 제3항 개정, 제38조 제1항 제1호 신설) - 방송광고 개념 세분화(제73조 제2항)
8차 (타)일부개정 2005.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론보도청구권 삭제(제91조, 제108조 제1항 제25호)

-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방송법의 개정은 큰 틀의 변화 없이 필요한 개정 사안 발생시 해당부분을 개정하는 부분 개정 형태로 개정되어 왔음.
- 방송법 9차 일부개정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남북교류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방송위원회의 직무, 방송발전기금의사용 등의 항목에 이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광고개념의 세분화를 명시하고 있음.
- 방송법 13차 일부개정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으로 인한 제 규정신설과 개정을 중심으로, 소유제한 조항에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시키는 사항, 방송분쟁조정위원회설치,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정 신설, 어린이 대상 광고관련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 방송법 15차 일부개정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스포츠 중계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 도입으로 관련조항 신설을 중심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관련 규정이 개정됨.
- 방송법 16차 일부개정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국내외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등록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개정.

■ 제16차 개정 방송법 이후 개정안

〈표8〉 제16차 개정 방송법 이후 국회제출 개정안

발의자	개정영역	주요내용
정부 발의 (2008. 2. 4)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8조 '소유제한'의 제2항에 특수관계자 개념 신설(현행법에는 대통령령에 규정) - 안 제15조의3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조항 신설. 각 사업자 유형별 추천, 허가, 승인 사항 명기. - 안 제15조의4 '최다역출자자 등 변경 승인절차 등의 특례'. 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과 관련 창구 방송위원회로 단일화. - 안 제73조 '가상광고' 개념신설 및 표기방법 신설. - 안 제74조 '협찬고지' 관련 세부사항 신설(현행 법에서는 대통령령에 규정)
심재철의원 한나라당 (2007. 11. 20)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4조의2 '취재의 자유' 항목 신설.
장윤석의원 한나라당 (2007. 11. 8)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73조 '방송광고' 제6항 신설. 지상파방송 및 공동체라디오의 경우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이광철의원 열린우리당 (2007. 9. 11)	일부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1조 '목적',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제69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조항에서 방송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 명기 형태로 개정.

● 16차 일부개정 이후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발의 안을 포함해 모두 4건으로 기존의 개정안과 유사하게 부분적인 조항의 개정안이 제출된 상황임.

3. 최근 법제화된 주요 방송관련법 현황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2007년 12월 28일 국회 법 통과 후 2008년 1월 17일 법 제정.
- 2008년 4월 1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 작업 중.

- 법률제정 목적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권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법률 내용

- 사업권역(법 제6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은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함.
- 겸영금지(법 제8조) : 신문법 상의 신문·뉴스통신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 못함.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신문법 상의 신문·뉴스통신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법인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할 수 없음.
-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법 제14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2008년 1월 29일 국회 법 통과

- 법률제정 목적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시청자 권익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법률 내용

- 디지털방송활성화 추진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 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디지털방송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법 제7조) : 2012년 12월 31일 이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을 정하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그에 맞추어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도록 함.
-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법 제9조) :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종료 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08년 2월 26일 국회 법 통과 후 2008년 2월 29일 법 제정.

● 법률제정 목적 :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법률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 방송·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고, 대통령 소속의 합

의제 행정기관으로 그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이 지명하는 2인과,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방송, 통신, 전파 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고, 동 소관사무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하여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함.

4.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법 및 관련법령 정비방안

■ 현행 방송·통신관련 법제의 구조적 차이

○ 방송분야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 방송분야 법령의 제정목적 : 방송법제는 주파수의 희소성 및 사회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통합·운영함과 동시에 방송내용규제,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참여제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함
- 방송분야 법령의 허가구조 : 방송사업에서는 전송수단별(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기능별(음악유선

○ 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 종합편성사업) 등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보통신분야

●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등.

● 정보통신분야 법령의 제정목적 : 통신법제는 전송내용의 비밀보호 및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운영함과 동시에 요금, 접속조건, 시장경쟁, 전송매체의 표준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방식을 채택함.

● 정보통신분야 법령의 허가구조 : 통신사업에서는 기간·별정·부가통신사업자 등과 같이 기능별로 차등을 두어 허가를 부여하거나 등록하게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방송·통신법제 개별 적용시 법제 흠결의 문제점

● 규제의 공백상태 발생 : 서비스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도 위성방송을 실시하지 못한 것과 동일한 문제 발생.

●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의 이중규제 및 비대칭규제 발생 :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대하여 방송법제와 통신법제의 이중규제 및 비대칭규제 문제 발생(IPTV와 케이블TV 등).

● 방송통신의 경계영역적 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흠결 :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방송적 성격을 가진 통신서

비스, 통신적 성격을 가지는 방송서비스 등 새로이 등장하는 경계영역 적 서비스에 대한 규율이 불가능한 상태임.

■ 방송통신법제 정비방안

○ 단기적 방안

- 현행 방송법제와 통신법제의 분리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직무수행, 규제기구 분산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 해소,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등을 위해 관계법령 정비

- 방송법제와 통신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간적 영역에 속하는 서비스들이 출현할 때마다 효율적인 규율을 위하여 최적의 법규를 선택하는 방식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산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채택가능.

○ 장기적 방안

- 장기적으로 방송과 통신부문의 통합규제기구(신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과 통신의 규제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송통신기본법(가칭)」 마련.

- 통합된 법체계는 정책, 사업, 설비영역을 분리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음. 「방송통신기본법」은 방송 통신에 관한 정책수단의 총괄규범으로 방송법의 정책부분과 전기통신기본법을 통합한 형태. 사업영역은 방송법의 사업부분과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합한 형태로 「방송통신사업법(가칭)」에서 규제하고, 방송·통신 설비는 「방송통신설비법」에서 다루는 방안.

- 또는 방송과 통신의 단일 기본법으로서 「방송통신법」의 제정 또는 별도의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제정 검토.

참 · 고 · 문 · 헌

-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2006).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률』. 방송통신융합추진지원단.
- 심영진(2006). 포털 뉴스서비스 피해구제의 쟁점과 방향. 『포털뉴스서비스로 인한 피해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 언론중재법 상의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현황 및 발전방향』. 노웅래의원 주체 세미나 자료집. 23-46쪽.
- 염용섭(2008). 방송통신융합 최근 이슈와 대응 방안 : 규제기구와 규제제도 개편논의를 중심으로. 『언론법의 최근 동향』. 한국언론법학회 주체 세미나자료집. 45-72.
- 윤석민(2008). 2008년 초 정권교체 시점의 방송통신 정책기구 개편을 둘러싼 논의의 혼선과 쟁점들. 『융합시대의 방송통신융합기구 개편방안』. 한국언론학회 주체 세미나 자료집. 3-34쪽.
- 임영호(2005). 한국형 언론지원 · 규제 기구 모델의 모색을 위한 문제제기. 『미디어 규제와 지원제도』. 10-37쪽. 서울 : 한국언론재단.
- 정병국(2006). 신문법 · 언론중재법에 대한 법률안. 『새 언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언론법 공청회 자료집.
- 정용준(2007). 바람직한 방통융합 기구 설치 방안. 『방통융합시대 IPTV의 도입에 따른 쟁점과 해결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체 세미나 자료집. 19-32쪽.
- 최민재 · 심영섭 · 이은주 · 안명규(2006). 『신문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신문발전위원회.
- 한국언론재단(2006). 『현재 결정과 언론관련법 개정 방향 모색』. 한국언론재단 주체 세미나 자료집.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ooringBill.jsp>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2008년 3월 (창간호)

발행인 | 박래부

편집인 | 정운현

발행일 | 2008년 3월 20일

발행처 | 한국언론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2층

편집디자인 | (주)나눔커뮤니케이션

tel_ 02-333-7136

문의 | 한국언론재단 미디어연구실 (02-2001-7893)

ISSN : 1976-8931

※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연구 결과와 의견이며, 한국언론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